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99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김병욱ㆍ허종식ㆍ양향자

박성준 · 남인순 · 홍성국

문진석 · 노웅래 · 윤영찬

조응천 · 정일영 · 김한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가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의 경우 각각 19.9% 및 23.6%가 상 승함으로써 이 곳 주민들의 조세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동일한 세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주택가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적인 세율조정이 사실상 어려우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도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

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11조의 2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470,000원+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2억원 초과	3,870,000원+1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5

제111조의2제1항 중 "6억원"을 "1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7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25,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25,000원+6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11조의2,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부과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11 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 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혂

행

1. • 2. (생략)

3. 주택

가. (생략)

나. 그 밖의 주택

<u>과세표준</u>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60,000원 + 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5</u>
1억5천만원 초과	195,000원 + 1억5천만원
<u> 3억원 이하</u>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u>초과금액의 1,000분의 4</u>

4. • 5. (생략)

② • ③ (생 략)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 주택 세율 특례) ① -----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 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

제111조(세율)	1	 	

정

아

1. • 2. (현행과 같음)

개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과세표준</u>	세 율
6천만원 이하	<u>1,000분의 1</u>
6천만원 초과	60,000원+6천만원
<u>1억 5천만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5</u>
<u>1억 5천만원</u>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2.5</u>
<u> 3억원 초과</u>	570,000원+3억원
<u>6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u>6억원 초과</u>	1,470,000원+6억원
<u>12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4</u>
12억원 초과	3,870,000원+12억원
147년 至四	<u>초과금액의 1,000분의 4.5</u>

- 4. 5. (현행과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u>과세표준</u>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30,000원+6천만원
1억5천만원 이하	<u>초과금액의 1,000분의 1</u>
1억5천만원 초과	120,000원+1억5천만원
<u> 3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2</u>
<u> 3억원 초과</u>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② ~ ④ (생 략)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 11조의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 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하다.

<u>12억원</u>
<u>.</u>

<u>과세표준</u>	세 율
<u>삭제</u>	<u>삭제</u>
6천만원 초과	6천만원 초과금액의
1억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1억 5천만원 초과	75,000원+1억5천만원
<u> 3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1,000분의 1</u>
<u> 3억원 초과</u>	225,000원+3억원
<u>6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2</u>
<u>6억원 초과</u>	825,000원+6억원
<u>12억원 이하</u>	<u>초과금액의 1,000분의 3</u>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 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u>제1</u>